

특허침해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용어 해석 기준 -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객관적, 합리적으로 해석: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09761 판결



쟁점

특허청구범위의 '접합'이라는 용어의 해석 +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대법원 판결요지

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
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후 2240 판결,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).

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(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),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.

구체적 사안의 판단

'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'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'접합'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

그런데, 피고 실시제품이 땀납재의 용융상태에서의 흘러내림이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

승한 접합재가 통형 접합 지지체 내측주면과 니켈 로드 외측주면 사이를 감싸 돌며 기밀
하고 있다거나, 통형 접합 지지체 및 저열팽창 도체와 매설 부재의 금속 노출부 사이를
연결하며 기밀하여 산화성 분위기가 저열팽창 도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
기 어려워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'접합'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
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
첨부: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09761 판결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